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현황과 과제¹⁾

Current status and tasks
of Public Building Design Competition System

글. 박석환
Park, Seokhwan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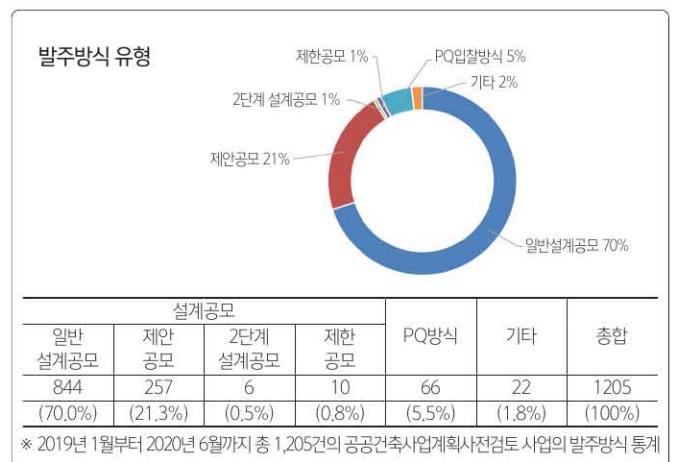
들어가며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 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205건의 공공건축 사업의 발주방식으로 보더라도 전체의 1,117건(92.6%)이 설계공모방식을 통해 발주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그간의 건축 설계발주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0.1.16.)으로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계발주 제도의 재평가와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설계발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여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 새로이 도입되는 설계발주 제도를 고려한 설계발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 이후의 설계공모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설계공모 방식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014.6.~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공공건축 설계발주 규정 및 절차 마련 고시금액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설계공모 이외에 발주 절차 마련
2014.6.~ 건축 설계공모운영지침 제정	설계공모방식 다양화, 공모안 제출도서, 평가기준, 심사위원회 자격, 구성, 운영 등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무, 제안공모 제출도서 작성요령
2017.9.~ 건축 설계공모운영지침 일부개정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2018.1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 1억원 이상 건축물로 확대(시행 20.1)
2019.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심사위원 자격 강화, 불공정행위 심사위원 자격 영구부탈,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범위 규정, 소규모 공고 활성화 및 공모일정 개선
2019.4.~ 건축 설계공모운영지침 일부개정	※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205건의 공공건축사업계획서전검토 사업의 발주방식 통계



1) 본 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행한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2019)」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현황 분석

설계공모제도의 현황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근거하여 2014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7년 7월에 일부 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2019년 4월에는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5년도 1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총 4,743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공모의 종류는 일반설계공모가 전체 사업 건수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안공모의 경우는 14%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입찰 및 기타 계약건수도 각각 25%,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설계공모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설계공모 건수 대비 제안공모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입찰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의 경우는 전체 사업의 28% 수준에 그쳤으며, 나머지 사업은 설계공모 공고 시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추후에 공개하거나 미공개하고 있다.

공모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비율이 24%로 제안공모 4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설계공모 제출물의 경우 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제출물을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거나 이를 합쳐서 하나의 적정수준에 제출물을 요구한 사업은 전체의 2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6%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사업규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5~10억 원 사이의 사업이 준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5억 원 미만의

사업 및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적정 제출물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준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공모비 보상은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비율로 책정하고 있으며 일반공모의 경우 평균 4천만 원(5%), 제안공모의 경우 평균 1천1백만 원(2%)정도로 나타났다. 제안공모 과제의 경우 제안공모 418건 중 제안공모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술제안 과제를 요청한 사업은 전체 사업 중 78% 정도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22% 사업에서는 제안공모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도면을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일정은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공모일로부터 심사일까지 총 공모기간이 평균 78일이 나왔으며 제안공모의 경우 총 공모기간은 평균 40일이 나왔다.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관계자들의 주요 의견²⁾으로는 설계공모 우선적용대상의 적정 범위, 건축 기획 등 사전업무 참여 업체의 설계공모 참여 제한 여부, 심사 위원 선정 및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절차 보완, 단일안 응모 시 심사허용,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심사결과 및 심사과정 공개 강화 및 확대, 제출도서의 표현방식 등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으로는 설적 산정 시 최소 참여 기간 기준 적용, 유사 용역 실적 산정기준 개선, 참여 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평가에 대한 찬반, 신용도 평가 기준 하향 조정, 발주기관마다 상이한 업무 중복도 평가 기준 일원화, 공동도급방식에 대한 산정기준 개선, 적정 수준의 제출물 요구 및 평가 문제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제언 사항

위의 제도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안공모는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나 주민이나 관계

2) 2016~2017년도에 진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선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과 2019년도 연구에서 진행한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정당한 대가! 상호존중의 시작입니다

“공정소비 실천, 동참해 주세요”

자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도면의 제출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여 일반설계공모의 변형방식으로 오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안공모방식의 적용 대상이었던 소규모 사업은 간이공모라는 새로운 종류

의 공모방식을 신설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제출물은 설계도면으로 한정하고 공모기간은 공모공고일로부터 작품 제출까지 30일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참가자격을 사전에 부여하는 Long-List 방식 또는 Short-List 방식 도입을 통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공모 참여 비용을 낮추는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에 대한 추가고려도 가능하다.

[표] 설계공모 방식 비교

구분	일반설계공모	간이공모	제안공모
적용 대상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나 주민·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고일~제출 마감일	90일 이상(다면, 당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30일 이상	20일 이상
공고일~등록마감	7일 이상	5일 이상	5일 이상
제출물	설계도면, 설계설명서(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 가능)	설계도면(그 외 일체의 추가자료 요구 금지)	포트폴리오, 과업수행계획서(설계도면, 조감도 등 금지)
평가대상	설계안	설계안	설계자의 경험 및 실적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
보상비용	설계비의 10% (한도 1억 원)	설계비의 5%	소정의 상금

* 출처 : 염철호 외(2019),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6



박석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협동과정도시설계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희림건축사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연구단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발주 담당자문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을 시설계획기준 연구,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거버넌스 기반 이용자 참여 디자인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shpark@auri.re.kr

건축사(Architect)와의 계약은 ‘안전한 성공’의 길입니다
건축, 부동산의 시작은 건축사의 기획업무로부터